

1. 제정 이유

바이오위기 (생태환경 불균형, 생물다양성 훼손, 화석에너지와 수자원 고갈, 기후변화, 환경오염, 질병 확산, 식량 부족 등) 해결을 위한 연구, 교육, 산학 및 봉사 등을 수행할 전남대학교 지속가능생태환경연구소를 설립하고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연구소의 명칭, 설립 목적, 기능, 조직, 운영위원회, 자원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전남대학교 지속가능생태환경연구소 규정 제정(안)

제1조(명칭) 본 연구소는 전남대학교 지속가능생태환경연구소 (Institute of sustainable ecological environment, 이하 '연구소'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연구소는 바이오위기 (생태환경 불균형, 생물다양성 훼손, 화석에너지와 수자원 고갈, 기후변화, 환경오염, 질병 확산, 식량 부족 등)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 연구팀의 분업 및 협력 및 융합의 연구과 바이오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생태 환경 불균형 및 생물다양성 위협 (종다양성 파괴, 생태환경 교란, 환경오염 등)의 생태환경 위기에측 및 생태환경 모델링 관련 연구역량 강화
2. 질병 바이오위기 (외인성/내인성 질병, 집단 감염, 암, 면역 및 대사질환, 환경 독성 등) 대응 실현 가능한 연구역량 극대화
3. 지역특성화와 국제 공동 협력을 통한 바이오위기 예측/대응 인력 양성기반 구축
4. 연구 인프라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5. 국내외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6. 기술 보급 및 교육 업무
7. 보고서의 발간, 학술 발표회 및 세미나 개최
8. 연구소 행정 업무에 관한 제 서류 발급
9. 기타 연구소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연구 및 봉사 사업

제4조(조직) ① 연구소에는 소장, 부소장,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소장은 전남대학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 연구처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④ 각 부에는 부장을 두며,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각 부의 업무를 주관한다.

⑤ 각 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생태 자원 연구부: 생물자원 탐색 및 연구/개발, 인력양성교육, 산학협력
2. 생물 유전 자원 기능 분석 연구부: 기초분자기작 규명 및 응용 연구, 인력양성교육, 산학협력
3. 생태 모방 연구부: 생태 모방을 통한 미래 산업적 가치 창출 및 실용화 연구
4. 운영지원부: 연구소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행정업무 수행

제5조(연구원)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연구원을 둘 수 있다.

1. 전임연구원: 외부기관 지원사업에 의해 연구소의 "전임"으로 임용된 자
2. 겸임연구원: 대학교에 재직 중인 전임교원 중에서 연구소장이 위촉한 자
3. 연구원: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수료자로서 연구소에 소속된 자
4. 연구보조원: 연구소에 소속된 학사 학위 이상의 학력 소지자
5. 특별연구원 및 자문연구원: 위 제1호 내지 제4호를 제외하고 연구소의 운영상 필요에 의해 위촉된 자

제6조(운영위원회) ①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소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장을 포함하여 소장이 위촉하는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소의 규정 및 운영세칙 제·개정
2. 연구소의 기본 운영 계획 및 예·결산
3. 부장·연구원의 임명 동의 및 자문위원·평가위원 위촉 동의
4.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

제7조(재정) 연구소의 운영경비는 보조금, 간접비, 각종 지원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기타 연구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소장이 따로 정한다.